

2001년도 중요재산취득(울속도주차장부지)승인의견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12. 12.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0. 12. 16.

다. 상정일자 : 2000. 12. 27(제89회사하구의회의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 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교통행정과장 정석환)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하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함.

○ 취득재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소재지 (위 치)	면적	지목 (구조)	시설개요	소요예산
울속도공영 주차장부지 및지상건물 매입	계	-	12,108.12m' (3,662.6평)	-	-	1,300,000
	토지	하단동1149-5 외2필지	11,802m' (3,570평)	잡종지	주차면수216면	1,250,000
	건물	상동	306.12m' (92.6평)	조립식 철근콘크리 트스리브	매점 2 화장실 2	50,000

○ 매각조건

- 서부산문화회관 입구부지(9,271m', 2,804평)무상사용
- 유료주차장 설치운영 가능
- 계약일로부터 10년간 무상사용후 협의에 의해 연장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상기취득부지는 우리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원지로서 평일에도 이용객이 평균 500~600명과 차량이 400~500대가 이용하고 토,일공휴일에는 이용객이 평균 3만명, 차량이 700~800대가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써 자리매김되고 있으며
-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지상건물을 매점으로 운영할시는 주차면수 216면 확보와 1억9천1백만원의 경영수익이 예상되므로 우리구의 세외수입증대는 물론 서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한 을숙도 이용객들의 주차난해소와 구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므로 위부지를 중요재산으로 취득함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고
- 그러나 부지매입 추정가 13억에 대하여는 인근부지 매매실례가격,공시지가등 취득가액 산정에 심도있는 검토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타협을 통한 적정가 유지선확보등 행정의 탄력적운용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며, 특히 예산의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을숙도주차장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기보다는 을숙도이용객들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바람(장용희위원)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